

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전준호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0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5. 1. 19.

발 의 자 : 전준호, 홍순복, 나정숙, 김정택,
박영근, 유 화, 윤석진 (7인)

□ 개정이유

-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라 「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가 2015. 1.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, 신설·변경되는 조직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사항 중 “미래전략관” 신설 및 “행정국”을 “안전행정국”으로 변경하고, “평생학습원” 국 신설과 안전행정국으로 재편된 “외국인주민센터”를 추가 함. (제3조제2항제2호)
-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사항 중 “주민복지국”을 “복지문화국”으로 변경하고, “대부해양관광본부”가 신설 됨. (제3조제2항제3호)
-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사항 중 “안전도시국”을 “도시주택국”으로 변경함. (제3조제2항제4호)

□ 개정조례안 : 불임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

□ 관계법령 : 불임

- 「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
- 「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(현행)

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가. 미래전략관, 공보관, 감사관, 안전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다. 농업기술센터, 평생학습원, 외국인주민센터,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

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 중 “주민복지국” 을 “복지문화국” 으로 하고, 나목 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나. 상록수보건소, 단원보건소, 대부해양관광본부,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

제3조 제2항 제4호 가목 중 “안전도시국” 을 “도시주택국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<생 략></p> <p>② <생 략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생 략> 2. 기획행정위원회 <p> 가. <u>공보관, 감사관,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> 나. <생 략></p> <p> 다. <u>농업기술센터, 중앙도서관, 감골도서관, 관산도서관,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> 라. <생 략></p> <p>3. 문화복지위원회</p> <p> 가. <u>주민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> 나. <u>상록수보건소, 단원보건소, 문화체육관광본부, 산업지원본부, 외국인주민센터, 여성비전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> 다. <생 략></p> <p>4. 도시환경위원회</p> <p> 가. <u>안전도시국, 환경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> 나. <생 략></p> <p> 다. <생 략></p>	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<현행과 같음></p> <p>② <현행과 같음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현행과 같음> 2. <p> 가. <u>미래전략관, 공보관, 감사관, 안전행정국</u></p> <p> 나. <현행과 같음></p> <p> 다. <u>농업기술센터, 평생학습원, 외국인주민센터,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</u></p> <p> 라. <현행과 같음></p> <p>3.</p> <p> 가. <u>복지문화국</u></p> <p> 나. <u>상록수보건소, 단원보건소, 대부해양관광본부, 산업지원본부</u></p> <p> 다. <현행과 같음></p> <p>4.</p> <p> 가. <u>도시주택국</u></p> <p> 나. <현행과 같음></p> <p> 다. <현행과 같음></p>

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섭단체의 구성) ① 안산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 다만,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
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·날인한 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.
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조의2(상임위원회의 설치)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.

1. 의회운영위원회 7명 이내
2. 기획행정위원회 7명 이내
3. 문화복지위원회 7명 이내
4. 도시환경위원회 7명 이내

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.

-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

1. 의회운영위원회
 - 가.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
 - 나.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 - 다.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·그 밖에 의회관련 각종 의안에 관한 사항
2. 기획행정위원회
 - 가. 미래전략관, 공보관, 감사관, 안전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
- 나. 기획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 - 다. 농업기술센터, 평생학습원, 외국인주민센터,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, 소관에 속하는 사항
 - 라. 구청(행정지원과, 민원봉사과, 세무1과, 세무2과) 소관에 속하는 사항
3. 문화복지위원회
- 가. 복지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 - 나. 상록수보건소, 단원보건소, 대부해양관광본부,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
 - 다. 구청(주민복지과, 환경위생과) 소관에 속하는 사항
4. 도시환경위원회
- 가. 도시주택국, 환경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 - 나. 상하수도사업소, U정보센터,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
 - 다. 구청(도시주택과, 건설행정과, 경제교통과) 소관에 속하는 사항

제4조(상임위원회의 위원)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 위원회위원(이하 "상임위원"이라 한다)이 된다. 다만,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
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5조(상임위원의 임기)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. 다만,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.
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.

제6조(상임위원장)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(이하 "상임위원장"이라 한다) 1명을 둔다.
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 한다.
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.
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제7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-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,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둔다.
- ⑥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⑦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의2(윤리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- ② 제7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.
- 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.
- ④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 한다.

-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위원중 최다선 의원이,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은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의 선임) ① 상임위원회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
-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중에서 선임한다.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.

제11조(간사)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.
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
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

제11조의2(직무대리) 위원장과 간사가 동시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

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

제12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는 폐회중에도 활동할수 있으며, 그 구성인원과 활동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③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.

제13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, 의사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